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35
----------	-----

2017.07.14.(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6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6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7월 10일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가. 제안이유

○ 신청대상 직종이 다양하고 매년 신청자가 다른 상황에서 종전 위촉된 심사위원의 직종으로 전문적·체계적인 심사가 어렵고

○ 취소 사유 발생 시 그 의결에 따른 심사위원의 소집 부담을 덜고자
위원의 임기를 명장이 선정됨과 동시에 해촉 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선정대상 직종에 대한 대상자 범위의 문맥 조정(안 제3조 제2항)

- 선정대상 직종을 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함.
- 심사위원의 회의소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소” 삭제
(안 제9조제1호)
- 위촉위원의 임기(2년 연임)을 “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도지사의 명장 선정이 있음과 동시에 해촉된다.” 로 함(안 제10조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유지영)

-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가 고시한 명장의 직종이 기계, 재료, 항공, 공예, 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로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위촉된 심사위원은 최대 4년간 심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명장의 분야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심사위원의 직종으로는 전문적·체계적 심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안 제10조의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안 제9조 제1호 ‘명장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중 취소는 기존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 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도지사의 명장 선정이 있음과 동시에 해촉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장의선정)① (생략) ② <u>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 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으로 한다.</u>	제3조(명장의선정)①(현행과 같음) ② <u>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u>
제9조(충청북도 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명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u>명장선정·취소에 관한 사항</u>	제9조(충청북도 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생략) 1. <u>명장선정에 관한 사항</u>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u>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u>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도지사의 명장 선정이 있음과 동시에 해촉된다.</u>

관련법령 발췌

□ 숙련기술 장려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숙련기술 장려법 시행령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 대한민국명장의 직종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9호]

대한민국명장의 직종은 별표와 같다.

[별표]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분 야	직 종
1.기계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중기계정비, 정밀측정, 금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2.재료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생산, 용접, 판금·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3.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4.전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5.전자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의료전자
6.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7.조선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8.항공	항공
9.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0.건축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창호제작, 실내건축, 건축도장
11.섬유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한복
12.광업자원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13.정보처리	정보처리
14.농림	농업, 임업, 축산,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15.해양	수산양식, 잠수
16.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17.에너지	에너지
18.안전관리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가스
19.환경	환경
20.산업응용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출판,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식품
21.공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22.서비스	요리, 제과제빵, 이용, 미용